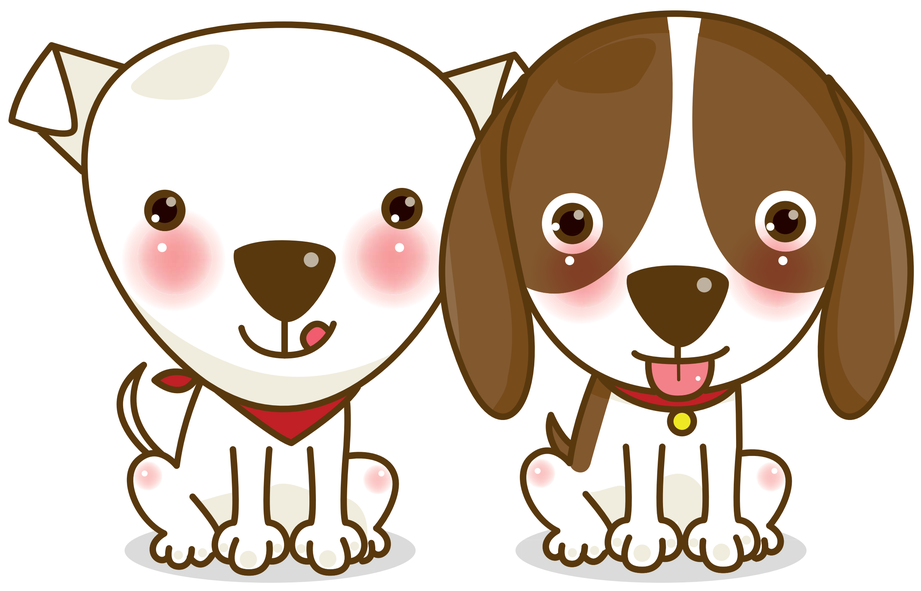
동물등록제 의무화!

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·군·구청에

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

단,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·면 및 도서(島嶼) 지역은 제외되며,

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동물등록, 어렵지 않아요!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·군·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

반려동물 등록신청

등록대상 : 3개월 이상 개



①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
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
③ 인식표 부착

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



동물등록증 발급

등록내용 : 등록번호, 소유자인적사항

⚠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?

▶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(RFID)*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,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

* RFID :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,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

⚠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?

▶ 소유자의 이름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.
(목줄을 착용시키고,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.)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